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3년 예천소방서 자체감사 —

2023. 9.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 번호 | 소 관 | 건 명 | 행정상 조치 | | 재 정 상 조 치 | | | | | |
|----|-------|-------------------------------------|--------|----|-----------|-----|----|----|----|----|
| | | | 시정 | 주의 | 회수 | | 감액 | | 추징 | |
| | | | | | 건 | 금액 | 건 | 금액 | 건 | 금액 |
| 계 | | 5건 | 1 | 4 | 1 | 667 | 0 | 0 | 0 | 0 |
| 1 | 예천소방서 |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 1 | | 1 | 667 | | | | |
| 2 | 예천소방서 |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실적 관리 부주의 및 재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 | 1 | | | | | | |
| 3 | 예천소방서 | 시설비 낙찰차액 집행 부적정 | | 1 | | | | | | |
| 4 | 예천소방서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 1 | | | | | | |
| 5 | 예천소방서 | 공공운영비 예산 집행 부적정 | | 1 | | | | | | |

2. 처분요구일람표

| | |
|---|----|
| 1.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시정) | 1 |
| 2.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실적 관리 부주의 및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주의) | 3 |
| 3. 시설비 낙찰차액 집행 부적정 (주의) | 5 |
| 4.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 7 |
| 5. 공공운영비 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 10 |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 | |
|---------|---------------|
| 제 목 |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
| 소 관 청 | 예천소방서 |
| 관 계 부 서 | AAA |
| 내 용 | |

예천소방서 AAA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특정업무경비를 해당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0.5.1.)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현행)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6.특정업무경비 규정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의 성격은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이며 지급대상은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다.

나아가 소방령 이하 화재진압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중 방호활동비 17만원을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고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공무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중 구조구급활동비 10만원을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2]세출예산집행기준 5-2 특정업무경비(204-03) 규정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에 퇴직, 직책신설 또는 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개인의 보수 지급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천소방서 AAA에서는 상기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근무를 하지 않게 된 날이 시작된 달과 복귀를 하게 되는 달의 특정업무경비를 일할 계산하여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했다.

그러나 예천소방서 AAA에서는 [표1]과 같이 20년 10월부터 5명의 직원들에게 512,030원의 방호활동비를 과다 지급하였고 2명의 직원들에게 318,79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나아가 [표2]와 같이 21년 8월부터 3명의 직원들에게 155,390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과다 지급하였고 3명의 직원들에게 156,660원을 과소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였다.

[표1] 방호활동비 부당 지급 내역

- 내용 생략 -

[표2] 구조구급활동비 부당 지급 내역

- 내용 생략 -

조치할 사항 예천소방서장은

- ① 부당하게 지급된 방호활동비 512,030원과 구조구급활동비 155,39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방호활동비 318,790원과 구조구급활동비 156,660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 | |
|---------|--------------------------------------|
| 제 목 |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실적 관리 부주의 및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
| 소 관 청 | 예천소방서 |
| 관 계 부 서 | BBB |
| 내 용 | |

경상북도 예천소방서 BBB에서는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관리하고, 대원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난 의용소방대원은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의 참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인 대원의 자녀로서 대장이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2021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 계획”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대상 자격 요건으로 타 대원의 모범이 되고 특별한 유공이 있는 대원의 자녀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소방서 BBB에서는 의용소방대원 개인별 교육실적을 관리하여 교육이수 기준에 미달하여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가 2020년 기준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의 참석 기준에 미달하여 2021년도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2021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대상자로 선발된 ◇●▷의 자녀 ◇●▲에게 1,872천원의 장학금을 지급 정지하지 않고 지급하였다.

[표] 해임대상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내역

-내용 생략 -

조치할 사항 예천소방서장은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 | |
|---------|-----------------|
| 제 목 | 시설비 낙찰차액 집행 부적정 |
| 소 관 청 | 예천소방서 |
| 관 계 부 서 | AAA |
| 내 용 | |

경상북도 예천소방서 AAA에서는 원활한 행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업무 및 예산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¹⁾」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설비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지만,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²⁾,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고,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되, 낙찰차액 사용 전에 신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천소방서 AAA에서는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낙찰차액 사용 전에 신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7년~2019년 예천소방서 ◇●▷

1) 2021.1.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됨

2) 부대공사 : 공사 중 주요한 부분을 가리키는 본체 공사에 대하여 부대적인 역할의 공사. 보통, 전기, 급배수, 공기 조화, 전기·소방·소화 등의 설비 공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음.

공사”의 시설비 5,950,000천원의 낙찰차액 142,031천원을 2019년 12월 “▼■■■◇ 설치사업” 등 총 8건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도 않고, 사용 전에 신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지도 않은 채 시설비 낙찰차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표] 시설비 낙찰차액 부적정 집행 내역

- 내용 생략 -

조치할 사항 예천소방서장은

앞으로 시설비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 | |
|---------|------------------------------|
| 제 목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 소 관 청 | 예천소방서 |
| 관 계 부 서 | AAA |
| 내 용 | |

예천소방서 AAA에서는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 격려품 구입 등을 위해 정원가 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타법폐지)³⁾,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경상북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소속 상근 직원에게 업무추진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압비로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개인 활동경비로 활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 양양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명절 선물과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했다.

3) 2021.1.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에 따른 폐지

그런데 위 부서에서 아래 [표]와 같이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품 및 명절 선물 등 15건, 12,451천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다.

[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 내용 생략 -

조치할 사항 예천소방서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공운영비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예천소방서
관 계 부 서 AAA
내 용

예천소방서 AAA에서는 원활한 행정활동 수행과 청사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를 집행하고 있다.

「지방채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운영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에 사용되어야 하고,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시설비로 집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시설비는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시설물·건축물 등 설치 공사비 및 대규모 수리비는 공공운영비가 아닌 시설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9~2020년까지 시설물 설치와 옥외구조물 도색, 시설 개선 등 시설비 성격을 가진 청사보안 CCTV 설치, 실내

구조 훈련시설 설치, 현장대응단 창고 보강공사 등 총 8건, 41,168천원을 시설비가 아닌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집행하였다.

[표] 공공운영비에서 지출된 공사 성격의 사업 내역

- 내용 생략 -

그 결과 시설비로 집행해야 할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집행하면서 세출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이 훼손되었다.

조치할 사항 예천소방서장은

앞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세입·세출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